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(안 제10조).
- 중소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8조제3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박 혜 진)